

2009년 일본기관방문

# 일본 후생노동성 및 국토교통성 기관방문 보고서

2009. 06

보고자 : 강완식 (인)  
이진원 (인)  
마선미 (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 방문 인원 및 일정

## □ 방문인원

- 강완식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장)
- 이진원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편의시설 연구 및 검수 담당)
- 마선미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홍보 및 편의시설 검수 담당)

## □ 방문지역 : 동경

일자	주요일정
5월 27일(수)	출국 (인천공항 ~ 나리타공항) 일본 대중교통시설 및 보도 편의시설 실태파악(점자블록 중점)
5월 28일(목)	-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Dept. of Health an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일본 국토교통성 방문 (Policy Bureau - Policy Division for Universal Design)
5월 29일(금)	입국 (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 1. 방문 목적 및 필요성

## 일본기관 방문목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의 편의시설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회제도와 계획의 향후 방향성을 파악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 및 검수 시스템,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과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시설에 관련 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일본은 80년대 초에 많은 장애인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장애인복지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부터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임. 또한 일본의 장애인복지의 흐름과 역사가 투쟁과 땀의 역사였고, 지금의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흐름에 많은 교훈이 되고 있음. 이에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반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정책들을 찾아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를 위한 기본 편의시설로 보도시설 및 건축물 내·외부 등 생활시설 전반에 설치되어 있음. 하지만 잘못된 재질 및 설계로 인하여 그 본연의 기능을 실추하여 일반인 및 시각 이외의 다른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오히려 가중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점자블록의 규격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음. 바닥재와의 대비되는 색상(황색)여부, 30cm×30cm 정격크기, 경관적 미관적 시점에서 점자블록이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이 이슈로 떠오름.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접근을 위해 점자블록이 처음 시행·설치된 일본의 실태 파악 및 규정을 참조하고 일본 기관 담당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규격 및 정의를 모색하도록 함.

○ 또한 이런 일련의 작업에 적용되는 일본의 지침(가이드라인)과 검수 시스템, 관리, 감독하는 단체의 현황과 수렴된 의견이 적용되는 방법 등을 알아 보고자 함.

○ 아울러 일본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유도 및 안내 시설에 대한 기술 및 연구 방향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 그리고 실제로 보도 및 여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시각장애인지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 비교 분석 및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Universal Design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국토교통성(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Policy Division for Universal Design

- 국토교통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국토 계획, 하천, 도시, 주택, 도로, 항만, 관용 건축물의 건설과 유지·관리 등과 함께 교통·관광정책, 기상 업무, 방재 대책, 해상의 치안·안전 등의 대책 등 사회자본 정비의 핵심을 담당함.(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의 행정 업무를 하고 있음)

### 1. 일본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공공교통사업자등으로부터의 이동등원활화실적보고서의 집계결과개요」

(2009년 3월 31일 현재)

- 여객시설(1일 평균 이용자수 5,000人 이상인 시설)

《단차의 해소》

여객시설전체...67.5%(2006년도말 63.1%)

목표치: 100% / 2010년	총시설수			전체에 대한 비율	
	2007년도말	전년도대비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6년도말
철도역	2,797	100%	2,801	67.3%	62.8%
버스터미널	40	95%	42	77.5%	76.2%
여객선터미널	9	100%	9	88.9%	88.9%
항공여객터미널	21	91%	23	76.2%	65.2%

《시각장애자유도용블록설치》

여객시설전체...90.9%(2006년도말 88.3%)

목표치: 100% / 2010년	총시설수			전체에 대한 비율	
	2007년도말	전년도대비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6년도말
철도역	2,797	100%	2,801	91.1%	88.6%
버스터미널	40	95%	42	77.5%	66.7%
여객선터미널	9	100%	9	77.8%	77.8%
항공여객터미널	21	91%	23	100.0%	91.3%

《장애자용화장실설치》

여객시설전체...59.6%(2006년도말 52.6%)

목표치: 100% / 2010년	총시설수			전체에 대한 비율	
	2007년도말	전년도대비	2006년도말	2007년도말	2006년도말
철도역	2,680	100%	2,678	59.4%	52.6%
버스터미널	32	97%	33	46.9%	27.3%
여객선터미널	9	100%	9	55.6%	44.4%
항공여객터미널	21	91%	23	100.0%	95.7%

- 일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철도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항공여객터미널 등 한국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달리 1일당 평균이용자 5,000인 이상인 여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전체여객시설 중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90.9%로 점자블록이며 모든 편의시설은 해당 여객시설에 2010년 까지 100%설치할 것이라 함
-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의 종류는 점자표지판(또는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음성설비 등 3가지로 나뉘나, 공공교통사업자등으로부터의 이동등원활화실적보고서의 집계결과개요에서는 점자표지판과 음성설비는 누락되어 있음
- ※ 일본의 경우 대상시설을 5,000인 이상 시설로 정하여 형평성 보단 효율성 추구함. 편의시설 구분은 한국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해 세분화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단차, 경사로 설치 등 이에 비해 일본은 단차해소로 묶어서 규정, 음성유도기 및 점자안내설비 누락되었음. 목표치는 2010년 까지 설치율 100% 계획 중으로 한국의 비해 전국 지자체가 능동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2. 일본의 편의시설 관련 법률(가이드라인)과 자문·검수 과정

○일본의 편의시설 관련 법률은 「고령자,장애자등의이동등의원활화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베리어프리 신법)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 1) 베리어프리 정비 가이드 라인(여객 시설편·차량등 편)
- 2) 여객선 베리어프리 가이드 라인
- 3) 도시 공원의 이동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 라인
- 4) 고령자, 장애자등의 원활한 이동등에 배려한 건축 설계 표준

등이 있고 각분야로는

- 1)베리어프리 관련 정보(종합 정책 관계)
- 2)공공 교통의 베리어프리화(종합 정책 관계)
- 3)마을 만들기과 베리어프리(도시·지역 정비 관계)
- 4)보행 공간의 베리어프리화(도로 관계)
- 5)건축의 베리어프리(주택·건축 관계)
- 6)철도의 베리어프리 관련 정보(철도 관계)
- 7)자동차 교통의 베리어프리화(자동차 교통 관계)

로 세분화되어 편의시설의 설치 방법 및 규칙을 정해 놓았음.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성 베리어프리 정책과에 자체 자문단을 설립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통해 개정이 되며, 개정되거나 수정된 사항은 1년에 1회 이상 지자체 자문단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공고되어 발효됨.

- 설계, 시공의 검수 및 자문과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해당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을 베리어프리 신법 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시설 시공 감리단의 감독 하에 설치하게 됨. 만약 준공할 때 해당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면 우리나라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인증기관과 비슷한 국토교통성 산하 자문회의 단이 심의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건설비용에 대한 일정한 보조금을 후원하는 식의 유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당사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지체장

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율에 비해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다소 떨어짐. 또한 지자체별로 단프리 신법의 적용차이가 존재하여 통일성 있는 설치현황을 기대하기 어려움.

### 3. 일본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정책 및 유도·안내시설

○ 2004년 가을부터 공공교통기관이나 주요 역 주변 등의 보행공간, 병원 등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베리어프리 시책을 총 점검하여, 향후의 대처방침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강령"으로서 그해 7월에 공표하였음.

-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의 기본 개념

- 1) 사용자의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건설
- 2) 베리어프리 정책의 통합
- 3)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
- 4)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창조
- 5) 기술과 방법 등에 근거를 두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

- 명료한 기준

-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에 근거를 두는 다양한 관련분야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2)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에 근거를 두는 정보 공유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3)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베리어프리 기준 증진
- 4)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에 근거를 두는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정
- 5) 비물리적인 기준의 완성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베리어프리 사회의 실현)
- 6)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의 현실화
- 7)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계획

- 8)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에 대한 유동성있는 대응
- 9) IT과 다른 신기술의 적용
- 10) 포괄적인 개척의 노력 (주요한 프로젝트 및 지역)

- 일본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이용가이드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등과 같은 특정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편의수단이 없음.
- 보도, 공원, 건물이나 여객시설 또는 차량 등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음성유도 및 음향신호기, 에스컬레이터 음성설비 등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개발된 공인된 기술은 없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벤처기업의 개발품은 있으나 공인되거나 국토교통성의 자문을 통해 인정받은 제품은 현재까지 없음.

#### 4. 일본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일본의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의 종류는 크게 점자, 유도, 음성안내로 나뉜. 점자는 점자표지판과 점자안내판으로, 유도는 점자블록, 음성안내는 음향신호기와 음향유도기, 에스컬레이터 음성안내 등으로 나뉜.

##### 1) 점자표지판

- 기능 : 손잡이, 벽면, 차량, 문, 기타발권기 등에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점자로 제공



차량에 설치되어 현재의 위치 정보 제공



손잡이에 설치되어 목적지 정보 제공



문 등에 설치되어 호실 정보 제공



엘리베이터 조작반에 설치, 조작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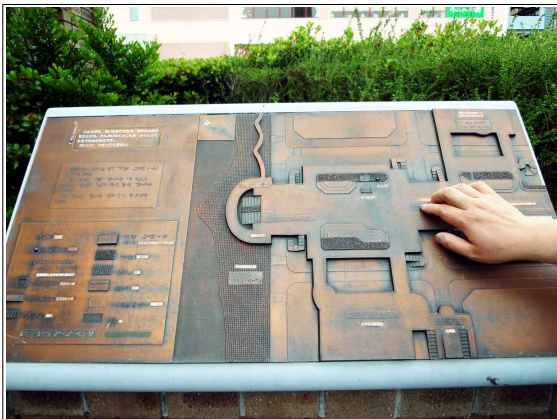
발권기 조작버튼에 설치, 조작 정보제공



발권기 조작버튼에 설치, 조작 정보제공

## 2) 점자안내판

- 기능 : 업무 및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하여 건물 등의 배치현황과 업무내용 등을 서술하여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특정 랜드마크 지점에 설치하여 목표지점까지의 보행코스를 확인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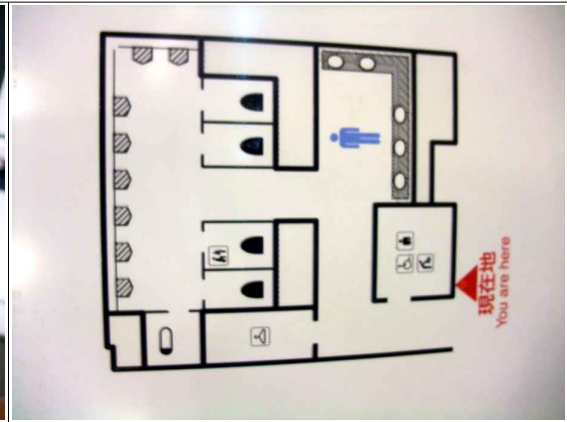
건물주출입구에 설치, 건물구조 정보제공



현위치와 매개시설까지의 동선 정보제공



범례로 부수적인 정보 제공



화장실 내부 구조 정보 제공

### 3)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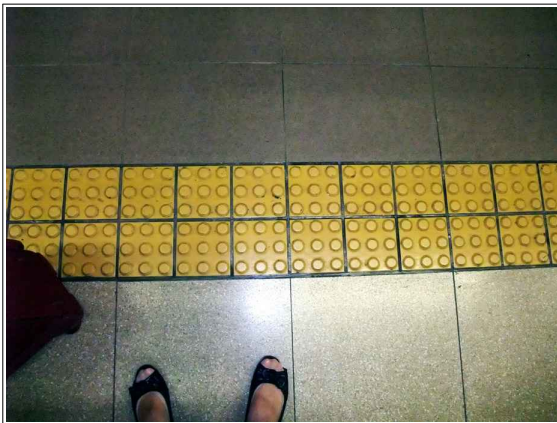
- 기능 : 시각장애인은 일상의 보행활동에서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의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자주 행해지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시각장애인 보행의 기본임.
- 종류 : 형태와 기능에 따라 점형(경고)블록과 선형(유도)블록으로 나뉨.
- 규격 :
  - 점형블록 - 30~40cm의 정사각형, 돌출점 25개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규격에 유동성이 있음.
  - 선형블록 - 30~40cm의 정사각형, 돌출선 4개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규격에 유동성이 있음.
 (색상의 경우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색을 사용해도 무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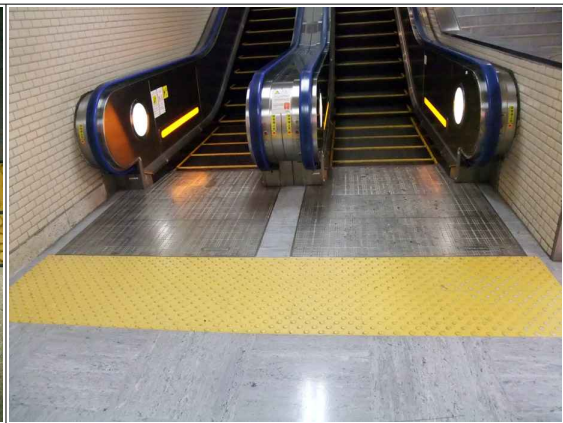
주출입구 부근 카펫 위 시공한 경우



바닥재와 색상이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작은 크기의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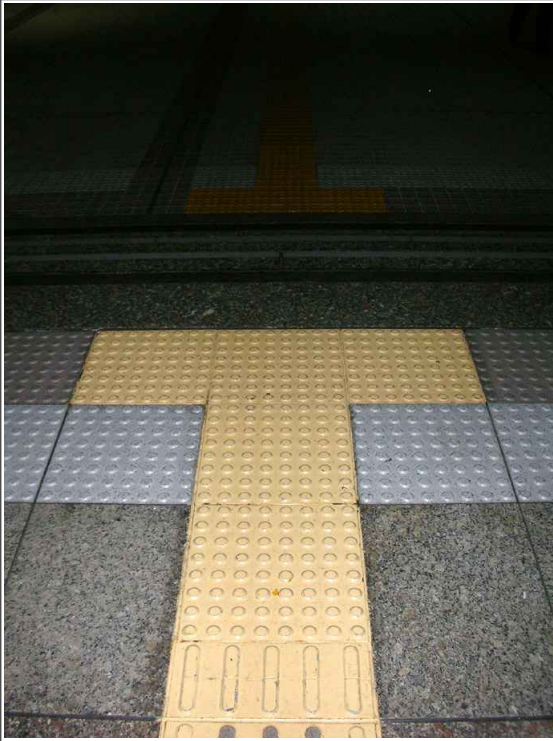
에스컬레이터의 진입부분에 설치된 사례



점형과 선형이 혼합된 점자블록



차수막 위에 점자블록을 설치한 사례



필수부분만을 색상을 추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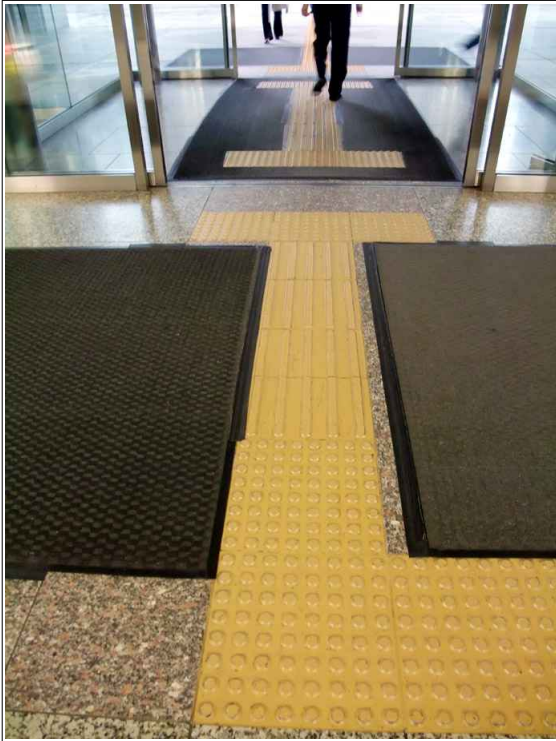
안내띠와 병설된 점자블록



횡단보도 부근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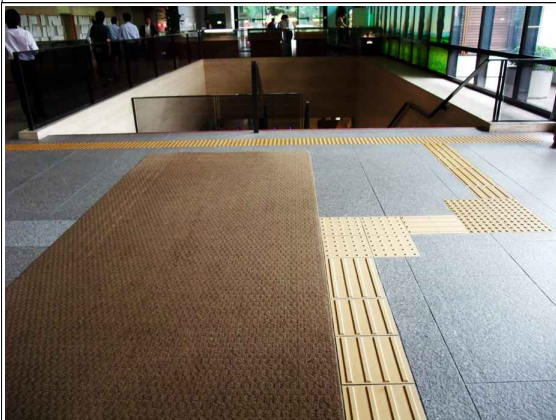
바닥 타일 크기에 맞춘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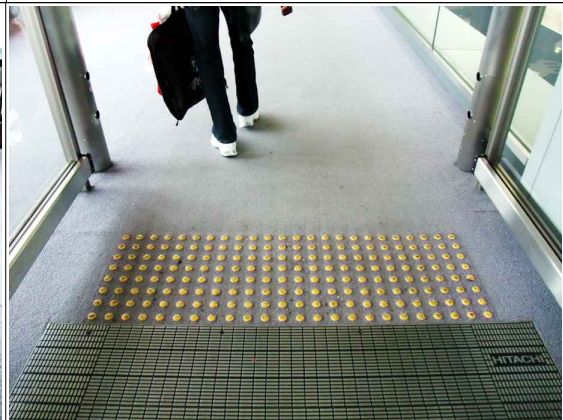
카펫사이에 설치된 점자블록



돌기만 시공한 경우 많은 부분 망실됨



계단의 우측으로 유도한 사례



무빙위커 진입부에 설치된 점자블록



승강장 부근 선형과 점형이 혼용된 설치



점자안내판 부근 황동재질의 점자블록 설치

#### 4) 음성안내

○ 기능 :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대중교통시설과 각종 목표지점 등 부근에 설치하여 음향,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위치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구분 : 음성유도기 - 각종 발권기,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사용법과 남·여 화장실 배치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함.

음향신호기 -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보행신호에 각 횡단보도 특유의 멜로디가 출력되어 진행을 유도함.

음향유도기 - 계단 등 매개시설 부근에 설치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핑퐁’ 등의 음향이 출력되어 진행을 유도함.



발권기 앞에 설치된 음성유도기



횡단보도 부근 설치된 음향신호기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음향유도기



발권기 앞에 설치된 음성유도기

### 3.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1. 기관소개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 그리고 노동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 확충을 관장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여성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음.)

#### 2.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

일본은 “장애인자립지원법” 하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활동보조인서비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개조서비스 및 주택알선, 각종 보장구 지원, 동료상담 제공을 비롯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 장애인 자립 지원법

##### (1)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특징

###### ○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원화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장애종별, 서비스의 종류마다 달라 서비스 격차가 생기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음. 따라서 서비스 제공 주체를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시읍면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장애종별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취업 지원 강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 안정소와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되는 복지서비스 제공

○ 수속절차와 기준의 투명화, 명확화

장애정도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시읍면 별로 달라 지역차가 생기므로 지원의 필요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관한 수속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명확화 함.

○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용한 서비스의 양과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담을 하도록 함. 나라의 비용 부담 책임을 강화하여 비용의 2분의1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였고 이용자도 이용한 서비스량 및 소득에 따라 원칙 1할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서로 지지하는 구조

(2)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구체적 내용

○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체계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장애 정도나 개호자, 거주 등의 감안해야 할 사항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결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와 시읍면의 연구자에 의해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 가능한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구분됨. 장애 복지 서비스는 개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개호 급부」, 훈련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훈련 급부」라 하여 각 이용 시 프로세스가 다름

○ 이용의 수속

장애자의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장애자의 심신의 상황(장애 정도 구분)이나 장애자의 분의 서비스의 이용 의향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지급 결정을 실시. 또, 장애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는 제삼자로 구성되는 시읍면 심사회에서 공평·공정한 지급을 결정 하도록 심사를 실시

○ 자립 지원 의료

장애인 의료비와 관련된 공비 부담 제도는,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

는 「갱생 의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육성 의료」, 정신 보건복지법에 근거하는 「정신 통원 의료비 공비」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성립에 의해, 이것들을 일원화 한 새로운 「제도자립 지원 의료 제도」로 변경되었음

○ 보장비비의 지급

보장비 (장애자의 신체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한, 또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사용되는 장비, 휠체어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현물시금으로부터 보장비비의 지급으로 크게 바뀜.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도 정률 부담이 되어 원칙으로서 1할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소득에 따라 일정한 부담 상한이 설정됨.

○ 지역 생활 지원 사업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가진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가장 친밀한 시읍면을 중심으로 이동 지원 사업, 일상생활 용구 급부 사업,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함

한편, 도도부현은 전문성이 있는 상담 지원 사업이나 시읍면을 넘어 광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실시

덧붙여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은 인구 규모나 공공 교통기관의 상황 등의 지역의 실정에 따르고, 지방 자치체의 창의 연구에 의해 유연한 형태로의 사업 실시하고 있음

(3) 장애복지 서비스 내용

○ 자립지원급부 (개호급부/ 훈련급부)

주택 개호 (홈헬퍼)	주택에서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등을 함.
중증 방문 개호	중도의 지체부자유자나 평소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택에서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외출시 이동지원등을 종합적으로 함.
행동 원호	자기판단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행동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외출지원

요양 개호	의료와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료기관에서 기능훈련, 영양상의 관리, 간호, 개호 및 일상생활을 보살핌.
생활 개호	평소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료기관에서 기능훈련, 영양상의 관리, 간호, 개호 및 일상생활을 보살핌.
아동 데이 서비스	장애아동에게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의 지도, 집단 생활에의 적응훈련 등을 함.
단기 입소 (단기 보호)	주택에서 개호하는 사람이 병이 있는 경우 단기간 (야간포함) 시설에서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등을 함.
중증 장애인등 포괄 지원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거택개호 등 복수의서비스를 포괄
공동 생활 개호 (케어 홈)	야간과 휴일,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등을 함.
자립 훈련(기능 훈련/생활훈련)	자립했던 일상생활 또는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함.
취업 이행 지원	일반 기업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함.
취업 계속 지원 A형태(고용형/비고용형)	일반 기업 등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함.
공동 생활 원조 (그룹 홈)	야간과 휴일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상담과 일상 생활상의 원조

○ 지역생활지원사업

상담지원, 커뮤니케이션지원, 일상생활용구의 급부 및 대여, 이동지원, 지역활동지원센터, 거주지원, 기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4) 복지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이용신청
- ② 1차 판정 장애정도구분 (시정촌)
- ③ 2차 판정 (심사회)
- ④ 장애정도 구분의 인정 (시정촌)
- ⑤ 서비스이용의향 등 감안사항 조사
- ⑥ 잠정지급결정 (시정촌)
- ⑦ 훈련평가 항목에 따른 개별지원계획작성
- ⑧ 위 결과에 근거해 최종지급결정 (시정촌)

## 4. 결론

○ 금번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의 기관 방문을 통하여 일본 장애 복지 정책의 방향과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 및 검수 시스템,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과 유도 및 안내 시설에 관련 기술 등의 정보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 후생노동성 -

장애자자립지원법은 기존의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정신보건 복지법 이라고 하는 장애별로 정해진 서비스를 탈피해 구조의 일원화, 시설 체계의 재편, 서비스 제공책임의 일원화, 취업지원강화 및 지원비 제도로 크게 바뀌게 되었음. 이 제도로 지금까지 세 가지 장애별로 발전해온 제도 간 격차의 시정이나 장애자의 지역생활지원이 한층 충실하고 강력하게 되었음. 그러나 고액의 서비스를 받아도 수입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지불하던 전과 달리 수익에 관계없이 일할을 내게 하여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세계화 바람에 후퇴하는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음.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법들 역시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적당한 삶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함.

둘째, 일본의 자립생활 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위탁과 운영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운영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데 이를 본보기로 장애인 복지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돼야 함.

셋째, 일본 외 여러 국가의 복지체계를 살펴보고 한국형 복지에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 사회복지영역과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 ○ 국토교통성 -

일본의 경우 해당기관이나 당사자단체가 아닌 공공교통사업자등으로부터

의 능동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집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2010년까지 편의시설 설치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과 저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성 산하 자문단의 운영과 이에 따른 지자체 시행단,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리단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설치법 등이 해당 지역마다 상이하고 유동성이 있어 다소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 이는 일본의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음. 교통정책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근간으로 한 특정 장애인 위한 시설이 아닌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음.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변의 확대, 그리고 자발적인 관리와 감시 활동으로 편의시설은 효율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즉 얼마나 많은 곳에 설치되었는냐는 설치율보다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또한 필요함.

둘째, 중앙 부처 산하의 편의시설 자문단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사회 흐름과 동기화하여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는 지자체 관련 실무 담당자, 시공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장과 검수내용의 괴리감을 해소하여야 함.

셋째, 편의시설이 현장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어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지라도 그 자체의 규격은 준수하여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함. 일본 사례 실태 조사와 같이 다양한 규격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베리어(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됨.

넷째, 외국의 여러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채용사례 및 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유니버설디자인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